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

500인 이상으로 하던 주민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.

□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사유는

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이 2005. 1. 27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.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은 "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·도는 500명, 제1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·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"고 규정 하였습니다.

□ **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**

- 본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2000년 6월 15일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으나, 최소 감사청구연서주민의 수가 많아 거의 활용되지 않았고,
-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청구연서주민의 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,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**참고로 우리구에서 주민감사가 청구된 사례로는**

2003.10. 신길7동 고현순 외 563명이 제출한 “영등포구민체육센터 감사청구” 건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11. 10

보고자 : 김 찬 재